

선거쟁점(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선거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당·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쟁점으로 부각된 4대강 사업 및 무상급식 등과 관련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쇄물·시설물·집회 및 서명운동 등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찬성·반대 활동을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정책선거를 실종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의 공정이란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나 시민단체 등 누구나 정당·
후보자들이 채택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선거참여자인 정당·후보자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유·불리한 선거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도 선거쟁점에 대하여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나 서명운동·시설물설치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정부나 단체 등이 선거쟁점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찬성·



반대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선거운동기간을 법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위원회의 법규운용은 종전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선거쟁점과 관련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나 시민단체의 찬성·반대 활동은 기존 운용선례에 따라 기자회견·보도자료제공·인터넷게재 및 토론회의 공정한 개최 등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선거법의 일부 규정들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법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으며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견해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모든 국민이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며, 우리위원회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법을 적용·운용하여 이번 지방 선거가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위원회는 선거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차례 Contents

1. 선거운동의 개념	8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관련 규정	9
사전선거운동 관련 판례 · 조치선례	10
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10
②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1
사례 예시	12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관련	12
②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13
③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관련	14





2. 정부 · 정당 ·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안내 16

①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 · 운용선례 17

②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 · 운용선례 19

③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 · 운용선례 21

사례 예시 23

①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23

②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24

③ 시민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25

④ 종교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28

관련 법조문 29





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관련 규정

사전 선거운동 관련 판례 · 조치선례

- 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②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례 예시

-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관련
- ②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 ③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관련



1 선거운동의 개념

사전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음.
-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후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입후보와 무관하게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 행해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임박하여 통상적인 방법·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시안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과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사전선거운동 관련 판례 · 조치선례

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
-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자를 집중 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획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위법함.
-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한 행위
-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인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한 행위

②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 약을 사러 갔다가 자신의 남편인 ○○○이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사례예시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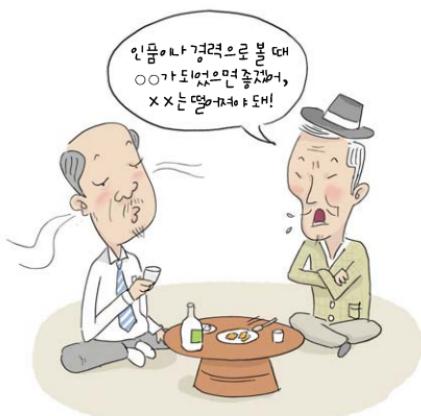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가 정당의 공천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
회견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정당
의 간부(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아님)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당에서 ○○○ 후보를
추천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고,
○○○ 후보는 당의 인재이며,
○○○ 후보는 우리당의 경제
전문가로서 공천을 받은 것'
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사례예시

②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소속당원에게 정당활동과 관련한 유폐적인 내용의 인사문을 선거기간전에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홍보자료를 송부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호별방문 제외)하기 위한 활동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일반선거구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비당원인 일반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특정 선거의 공약으로 설명·선전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선전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를 토론자로 참여시키는 행위
- 정당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강연 등을 통하여 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당내경선을 홍보하는 활동

※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제한·금지됨

사례 예시

③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 단체가 선거기간전에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통상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종교단체 소속지의 특정날에 소속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취재 ·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단체가 각종 회의를 개최하거나 강연을 개최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외형상 직무행위 또는 업무행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2. 정부 · 정당 ·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안내

- ①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 · 운용선례
- ②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 · 운용선례
- ③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 · 운용선례

사례 예시

- ①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 ②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 ③ 시민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 ④ 종교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관련 법조문



2 정부 · 정당 ·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안내

선거쟁점의 의미

- 선거쟁점이란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바,
- 4대강 사업의 계속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돼왔던 것이라도, 위와 같이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 및 단체의 활동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①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 · 운용선례

관련법규정

- **정부조직법 제37조 · 제2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 정책, 학교교육 ·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공직선거법 제9조 ·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운용선례

- 정부가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최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청사나 민원실에 비치·게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보도자료제공, 기자회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직무라 할 것임.
- 그러나 이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TV 또는 라디오 광고,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홍보물 배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각종 행사개최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임(2010. 4. 12. 회답).

-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간에 논쟁이 되고 있던 국부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앙일간지 등에 해명성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관권선거 시비를 불러일으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정부의 선거관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를 자제하도록 협조요청 (2000. 3. 23.)

②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 · 운용선례

관련법규정

-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 시설물 ·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함.
- 공직선거법 제90조 · 제9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인쇄물·시설물·광고등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
· 제93조에 의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운용선례

- 정당이 정당집회가 허용되는 시기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정당이 선거 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여 무방함.
- 그러나 정당이 정당집회가 허용되는 시기라 하더라도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배부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제90조·제93조 등에 위반됨.

③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 · 운용선례

관련법규정

- 공직선거법 제90조 ·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 등을 배부 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인쇄물 · 선전시설물 ·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운용선례

- 시설물 등 설치 · 게시 · 배부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 ·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등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치 · 게시 · 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 인쇄물 배부 및 언론 광고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게시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 서명활동

선거쟁점에 대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위반되나,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선거쟁점에 대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무방함.

● 집회개최 등

- 선거기간전에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 선거기간 중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사례예시

①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국정설명회 개최

- 정부가 국가 정책(4대강 살리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정설명회 개최

- 정부가 선거쟁점에 대하여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인쇄물 · 시설물 등

-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인쇄물 · 시설물 등을 국가기관 · 자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청사나 민원실에 비치 · 게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설명 자료 게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인쇄물 · 시설물 등

- 정부가 선거쟁점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범위하게 인쇄물 · 시설물, 광고물, 집회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②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시설물 등 설치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시설물 등 설치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 · 광고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신문과 정기간행물이하 “일간신문 등”이라 함께 의한 광고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회 이내로 하여야 함

서명

- 정당이 선거쟁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인쇄물 · 광고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서명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간 선거쟁점으로 부각된 현안에 대하여 거리 등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②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기타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기타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을 이용하여 정치홍보 연설 등을 하는 행위

③ 시민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시설물 등 설치

-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단체의 내부시설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시설물 등 설치

- 선거장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장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장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배지 등 표시물이나 광고물을 배부하여 옷에 착용하게 하거나 차량에 부착·운행하게 하는 행위
- 선거장점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기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③ 시민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인쇄물·인터넷·광고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 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의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통하여 오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 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보도 자료 제공 기자회견,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인터넷·전자우편 등 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서명활동

-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 단체의 활동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하여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인쇄물·인터넷·광고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또는 호별로 방문하여 배포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서명활동

- 선거쟁점에 대하여 거리에서 또는 호별로 방문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기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③ 시민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집회개최 · 거리행진

-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전까지 다수인이 응원하지 아니하는 관련 현장에서 언론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성명서 낭독·퍼포먼스 등 소속 구성원만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집회개최 · 거리행진

- 다수인이 응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쟁점에 대한 단체의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피켓이나 표지판·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는 행위

토론회

-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친반 양측을 초청하여 공정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명한 단체는 제외)가 선거운동 기간중에 후보자나 토론자(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에 포함)를 초청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라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4 종교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시설물

- 종교단체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내용 없이 종교적 신념에 비통을 두고 종교적 색채의 문구로 표현되는 등의 현수막을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각 성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 등 배부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가 발간한 예시 '창조질서 가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춰 애야 합니다' 만화 등의 홍보책자를 신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서명운동

- 해당 종교단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전부터 해 오던 방법으로 서명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미사·법회·예배 등

- 종교단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 등을 통하여 4대강 사업을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시설물

- 선거의 주요장점으로 부각된 4대강 사업 관련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여 일반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 등 배부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가 발간한 예시 '창조질서 가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춰 애야 합니다' 만화 등의 홍보책자를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서명운동

- 4대강 사업이 선거의 주요 장점으로 부각된 사점에서 신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찬성·반대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미사·법회·예배 등

- 미사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관련 법조문

제 58 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7 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 89 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0 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크트 등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 93 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

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리·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 101조 (타연설회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 103 조 (각종집회등의 제한)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밀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④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 107 조 (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 254 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 죄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쟁점(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발 행 | 2010년 5월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길 44

Tel. 503-1114(代)

편집 · 인쇄 | (주)이문기업(02-504-1600)

선거 · 정치자금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안내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및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오니 주변에서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 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어 디서나 **1588-3939**
www.nec.go.kr

“정치인에게 금품 ·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